

울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278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268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2781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우, 조은지, 박동인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탁현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4.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0,17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2014.

10.경부터 총 8건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 중

127,6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 공사대금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5553호)를 제기하였고, 2016. 6.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6. 4. 14.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2018.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7.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B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 중 2018. 12. 26. 이루어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2019. 2. 28.까지 3,000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2020. 2.부터 2024. 2.까지 5년간 매년 2월 말일에 2,000만 원씩 지급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 B는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액이 1억 3,017만 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합의로 원고와 피고 B는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1억 3,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과 이에 대하여 2019. 3. 1.(원고는 지연손해금을 2016. 4. 1.부터 구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9. 2. 28.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은 2019. 2. 28.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산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인 130,1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8. 12. 26.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경 피고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아니라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형사고소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인 피고 B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할 당시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결

결국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형석

[별 지]

(토지의 표시)

1. 울산 중구 G 대 202.6㎡

(건물의 표시)

1. 울산 중구 G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H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116.28㎡, 2층 96.74㎡, 3층 61.38㎡ 끝.

